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시설현대화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	대화		세목		디단체자년 타민간융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시설	설현대화	(버섯, 녹차	·, 약용 등)		예산 (백만원) 3,504					
사업목적	특용작물시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배·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 경쟁력 향성			등어업인등의	지윤	원에 관한 특	별법	제5조(농	어업들의		
지원자격 및 요건	■ 녹차·의■ 수출 가	ᅣ용작물 공법인 ┆ 를 입은	은 유통· 및 연계농 ⁷ 농가, 친혼	가공시설에 가, 농산물전	한해 문생4	h, 약용 등) 저온저장고 산단지, 수출 증 농가, 자결	지원 우수	가능 농가, 태	풍·화재		
지원한도	법인 1,000년	백만원,	개인 200빅	백만원(버섯종	균배	양시설은 법	인, 개	인 1,200	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	자 3	30	자부담	20		
	-	_						(단위 :	<u>백만원</u>)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u>년</u>		
연도별	합 계	8	3,262	9,594		8,979		8,9			
전도될 재정투입	국 고		2,016	2,340		2,190		2,19			
계획	지방비		3,024	3,510		3,285		3,28			
	용자		1,206	1,404		1,314		1,3			
	자부담		2,016	2,340		2,190		2,19	90		
	* 융자예신	은 실집	행율(40%)을	을 감안하여 ?	면성						
담당	당기관		담당	ţ과		담당자		연릭	ᅡ처		
농림축	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무관 박태준 무관 김선0 무관 한문소		044-201-2238 044-201-2239 044-201-2242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0년 2월 15일까지 시도담당자 제출 : '20년 2월 말까지					나업시행기관		지지	사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	보시스	템(AGRIX)	사업시행지	침서						

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어야 함
- ※ 법인체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우선지워>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 및 교체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 * 예시 외 자주식 또는 트렉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및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특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유통·가공을 위해 필요한 기기
 - * 원물 형태 등으로 유통할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가공 시설 지원은 불가
 -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 예시 외 자주식 또는 트렉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및 저온차량 등은 제외하며, 녹차·약용작물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대형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예시되지 않은 자주식 또는 트렉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6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4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 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기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인	400	80	120	120	80
농 가	200	40	60	60	40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 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Ⅱ /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19, 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9.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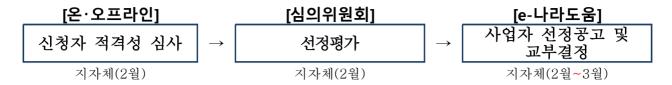
지자체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20.2.15일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붙임 제1-1호 서식),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선정주체 : 사업시행기관(시·군 및 시·도)

- 시·군 : 사업신청서 및 관련사실을 확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 제출

- 시·도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보고('20.2월말)

○ 선정방법 : 시·도 또는 시·군은 품목별 특성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대상자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 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자체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 치세 확급금은 지워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10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
7]7]	5년	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 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Ⅲ / 평가 및 환류

□ 2021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 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1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0.6월말)
- \bigcirc 신청절차 : 시·군·구 \rightarrow 시·도 \rightarrow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21년 사업) : '20년 4월중 대상자 수요조사
 - * 시·도(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20년 6월까지 공문 제출

<붙임 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u>'00년</u>	· 특용작물	(버섯·녹	차·'	약용직	물	등)시	설 현	대호	나 사업	신청사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딘	체 (□	영농조	합, 🗆 농	<u></u> 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	농업경 ⁽ 등록반			경영체 록번호				
	대표자					생년	년월일 인번호)				
일반 현황	재배작물					재비	배규모			m²	
	소속 농가수						업참여 :가수				
	주 소				사업	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	<u>덕</u> 화)		진	전자우편)		
	재배시설	긴어(비닐)재티	배사 m²	판넬재비	내사 m²	콘크리.	<u>트</u> 재배사 m²	기	타 m²	계	m²
시설 규모	부대시설		m²		m²		m²	기	타 m²	계	m²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	식
	사업규모	재배시설(재배사)				*			ㅏ업비를 ∙ 시 별지 즉	구체적으로 작성)	<u>-</u>
사업 계획	(천원)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 작성(필요시 별기					<u>-</u>
	재원조달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	담
	(천원)		(2	소계)	<u></u>	.조	융자				
다음 개인정	 와 같이 특용작들 보를 처리하는 것 형과 관련된 붙임	에 동의합니다의 개인정보의	ㅏ. 의 수	집·이용어	동으	합니다		<u> </u> 가여 시	나업대상지	_ · 선정기관	등이
☑ 사업신경	청과 관련된 붙임	의 개인정보의	의 제	공에 동의	비합니	다.					
			20	년 ·	월	일					
					신청	사				(서명 또는	= 인)
		<u> </u>	ر ا	│장·군台	ᅡᅮ	청장 구	시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 없음	

<붙임 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m²	시설재배규모	m²	수출참여규모	m²
	지원연도	년	사업명		
기 지원액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 (바:	·별 재배면적 각면적 기준)	품목	별 생산량	소 득 액	수출현황				
下 正	품목	면적(m²)	품목	생산량(톤)	(백만원)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합계		합계		합계 :					
'19(실적)										
'20(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비	H사	핀	넬재배시	ŀ	콘크리트	Ē재배사		기타		
생산시골 	m²		:		m²		m²		m²		m²		m²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	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구네시글 		m²		m²		m²		m²		m²	I	대	
생산기기 생산기기													
8건기기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규격출하		당기순이익
	古	폭별	계	공등	동출하	개별출	하	수출	품질인증 (톤, %		(톤, %)		(백만원)
사업실적	'19년	물량 (톤)							/		/		
	19년	금액 (백만)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세부내역	규모(m²)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계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 단위는 m²(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게보시어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백민	·원)		기금계
세부사업별	사입당	(천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A+C)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시설 및 장비 -								
。기타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 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

ㅁ ○○도

(단위 : m², 톤)

								사언	계획(친	·원)		
순 위	성	명	주	소	재배면적	시 설 설치계획	계				자부담	비고

- * 재배면적은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별지 제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u>'00년</u>	<u> 특용</u>	·작물(버섯	·녹차·약	용작물	분등)시설 현대	화	사업 변경	경신청	서
	유 ⁻ (해당유형		[□ 개인	딘	·체(□	영농조합, 🗆 농	: 업호		자단체)	
	사업신: (개인·법	청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돈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일반 현황	재 배 :	작물					재배규모			m²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르	낚 처	전화)			휴대전	전화)		전자우편)		
		종	류	사'	업내용		규모(m²) 및 =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 (기 :	
		재바 개·5									
사업	당초	재 바 증·기	ㅐ축								
		시설 장I									
		기	타								
계획		종	류	사'	업내용		규모(m²) 및 =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 (기 :	기 간)
		재 바 개·5									
	변경	재 바 증·기	내축								
		시설 장I									
		기	타								
변경 (상세호	사유 작성)										
위와 같	이 특용직	 물시설현	현대화/	사업 계획을 변	변경신청ㅎ	· 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	년 ·	월	일				
				_3	_	_			,	/17b4 -c.i	- 01)
				0 0 7	しひ・マイ	신청 ▷.구 ⊅	<u>사</u> 청 장 귀하			서명 또는	= 인)
* 사업대	l상자는 사 <u>위</u>	업변경 필	요시 해당				사도지사는 사군	승인.	사항 검토 후 등	동식품부 보	코고